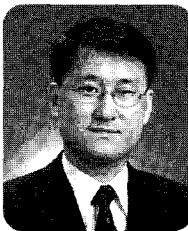




서울시세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성현 차장
본회

양돈농가들이 육가공업체와 거래시, 시세 적용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도매시장이 과거 3개소가 운영되던 시스템에서 지금은 1개소만 운영되면서 과연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들간에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돼지 기준시세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9월 서울 태강산업이 휴장되면서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서울도매시장 평균가격의 대표성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속화되었다.

경기도 포천, 연천, 철원 등 한수 이북지역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수도권 4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으로 기준시세를 적용하여 거래하여 왔으나 7월 21일부터 다시 서울시장 가격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수 이북지역의 육가공업체들이 양돈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도적으로 수도권 4개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적용하였으나, 해당업체들이 “우리만 앞서나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가격 정산 기준을 서울 시장 가격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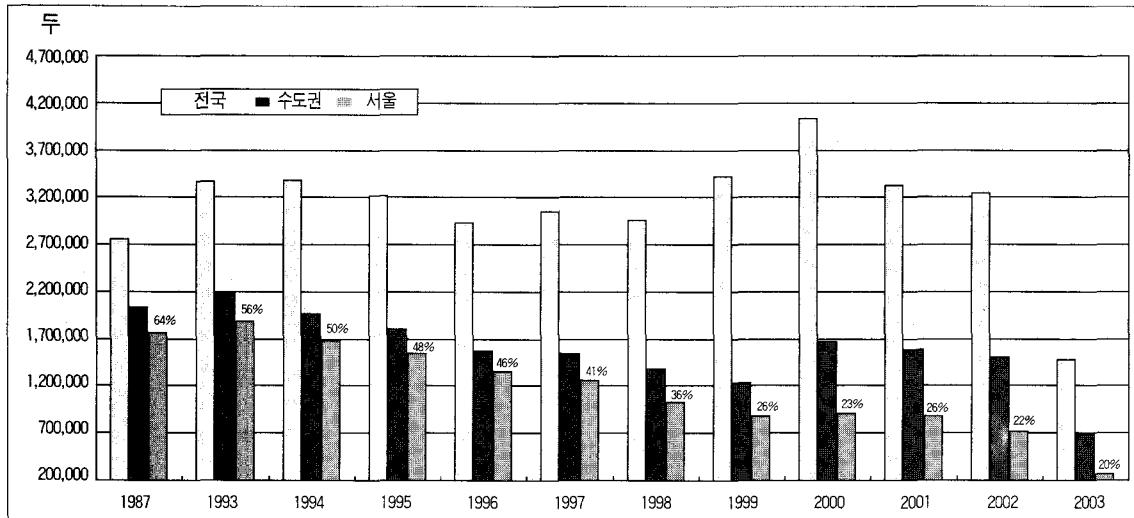
대체적으로 농가들은 육가공사와 거래시 직거래의 경우 “서울시장 가격×67% (수율)”, 중간상인에게 판매시 66% (수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1. 돼지시세 적용의 문제점

가. 대표성 상실

1998년까지 서울도매시장은 농협 축산물공판장, 태강산업, 우성농역

〈그림1〉 돼지 경락두수 현황



* 2003년은 6월까지 자료임

등 3개 도매시장으로 전국 도매시장 경락두수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1999년에 우성농역과 2002년에 태강산업이 폐장되면서 현재는 서울시장의 비중이 전국 경락두수의 20%에 불과하다.〈그림1 참조〉

또한 최근 10년간 전국 도매시장 대비 서울 도매시장의 경락두수 비중은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가공 업체들은 “가격에 적용하는 박피 물량을 비교해 보면, 서울 시장의 비중이 29% 내외가 되기 때문에 대표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기준가격으로 삼고 있는 곳이 1개 시장의 것이라면, 표본집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안이 없다. 과거에는 3개 도매시장의 평균치를 가격 기준으로 삼아 1개 소에서 경매중단, 전산고장 등이 있어도 나머

지 2개소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가격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현 서울도매시장의 가격은 기준가격으로서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육가공업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나. 비규격돈 및 위축돈의 높은 출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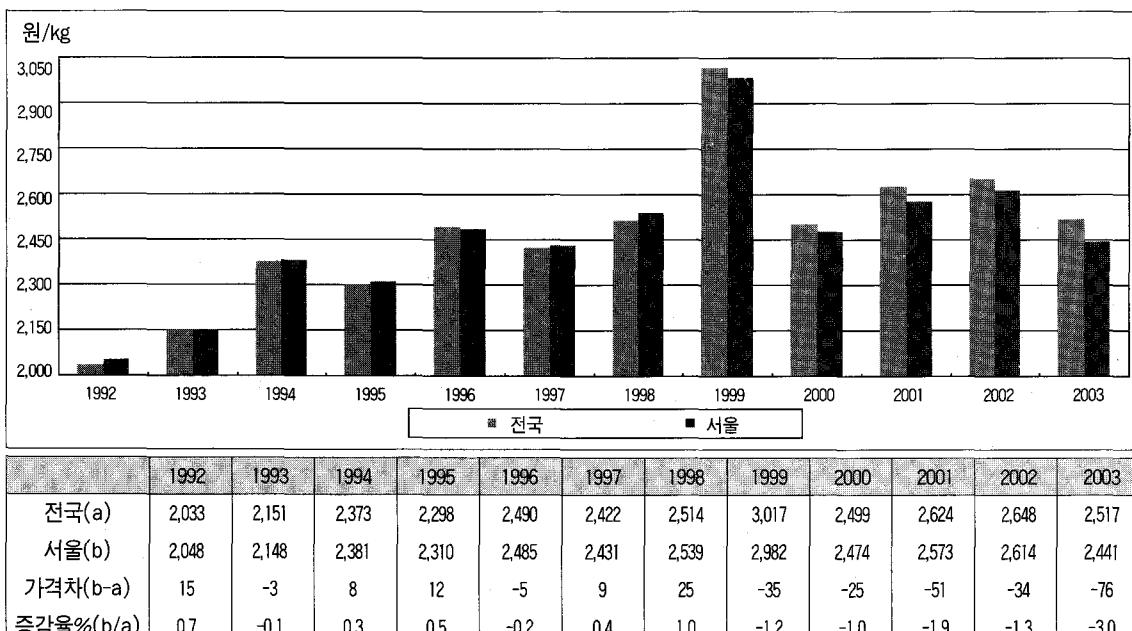
2002년 D등급 출하비율을 보면 서울 농협공판장은 13.7%이며,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 비율은 13.0%로 서울 농협공판장의 D등급 출하비율이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치보다 0.7%P(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등급은 전국 13개 도매시장이 39.4%를 차지하는 반면 서울농협공판장은 37.8%로 서

〈표1〉 전국 및 서울 도매시장 등급별 출하 비율

	전국 13개 도매시장 평균					서울 농협공판장				
	A	B	C	D	계	A	B	C	D	계
암	457,994두 (42.4%)	345,918 (32.0)	159,623 (14.8)	116,600 (10.8)	1,080,135 (100.0)	126,560 (40.4)	106,398 (33.9)	46,474 (14.8)	33,974 (10.8)	313,406 (100.0)
수			6,608 (20.3)	25,957 (79.7)	32,565 (100.0)			2,376 (19.6)	9,733 (80.4)	12,109 (100.0)
거	218,507 (36.3)	202,615 (33.6)	101,197 (16.8)	80,187 (13.3)	602,506 (100.0)	80,489 (36.1)	74,600 (33.5)	36,275 (16.3)	31,361 (14.1)	222,725 (100.0)
세										
계	676,501 (39.4)	548,533 (32.0)	267,428 (15.6)	222,744 (13.0)	1,715,206 (100.0)	207,049 (37.8)	180,998 (33.0)	85,125 (15.5)	75,068 (13.7)	548,240 (100.0)

*E등급은 가격 평균치 산정에서 제외됨.

〈그림2〉 연도별 지역 경락가격 동향



*2003년은 6월까지 자료임.

울농협공판장의 A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1 참조〉

이는 타 공판장의 경우 하위 등급의 돼지를 출하할 경우 페널티 적용으로 제재를 하지만, 서울 농협축산물공판장은 제재조건이 없어 하위등급의 출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도매시장이 전국 13개 도매시

장 평균보다 A등급이 낮고, D등급이 높아져 서울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전국 도매시장 평균보다 2003년에는 76원 낮게 형성되고 있다. 서울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전국 도매시장 대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차이 금액은 점점 크게 발생되고 있다.(〈그림 2〉 하단 참조)

다. 전국 평균가격과 서울 평균가격의 차이는 76원

- 해마다 차이 늘어나, 갈등요인으로 상재
- 1천두 사육농가 연간 1천만원 상대적 손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평균가격과 서울 평균가격의 차이금액은 1998년까지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서울 평균가격이 5년 연속 전국 평균가격보다 낮았다. 또한 그 차이 금액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전국 평균가격과 차이금액은 1999년 -25원, 2000년 -25원, 2001년 -51원, 2002년 -34원, 2003년 -76원이다.

2003년의 경우 서울시세 적용농가들은 두당 5천원(76원×지육66kg)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1,000두 사육농가가 연간 2,000마리를 출하할 경우 연간 1천만원의 상대적 손실을 보는 것이다.

라. 서울 도매시장의 갑작스런 작업중단에 따른 대책 부재

서울 농협공판장은 1986년 개장이래 하루 2,500여두의 돼지를 도축하여 도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소음·악취 발생 등의 이유로 도축장 이전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서울 농협공판장 도축장 이전 문제는 1996년부터 제기되어 서울시 송파구 의회도 “도축장 폐쇄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울시도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축 기능을 폐쇄하라고 통보하



<사진> 서울 농협 공판장은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축 기능을 폐쇄할 것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다. 사진은 서울 농협공판장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걸린 “도축장 폐쇄”를 촉구하는 플랭카드. 인근 주민들의 반발속에 도축 기능은 계속되고 있다

였다.

이미 폐쇄 통보 시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농협공판장이 도축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협·축산농가·축산물 중도매인 등 축산업계의 반발과 부천 공판장 이전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농협공판장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도축장 폐쇄를 주장하고 실력행사에 나설 태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서울농협공판장이 언제 도축기능이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육가공업체들이 기준가격으로 제시하는 서울 농협공판장이 인근 주민 또는 내부의 문제로 작업이 중단된다면, 기준가격을 제시할 서울의 또 다른 도매시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커진다.

서울 농협공판장 도축장 폐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던 양돈농가들도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과 서울도매시장 평균가격의 괴리율이 커질수록 서울 농협공판장 도축장이 폐쇄되기를 바라는 농가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소 잊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미리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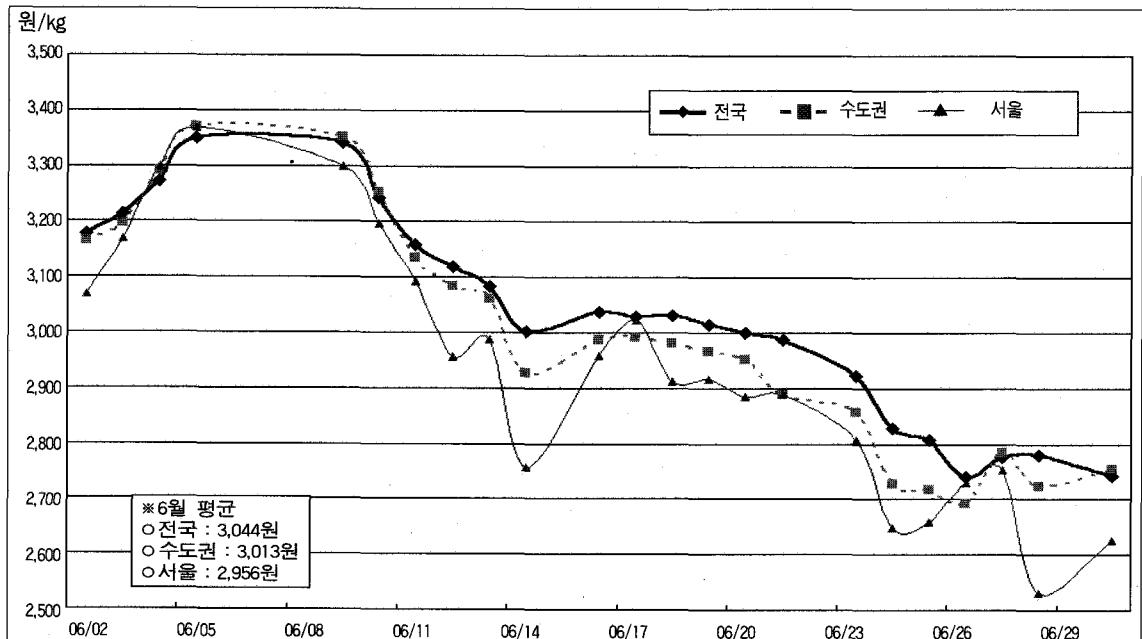
대비하는 자세로 전국 도매시장 평균치를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 농협공판장에서 갑작스런 사태로 도축기능이 중단되더라도 완충 역할이 될 수 있다.

마. 심한 가격 등락폭

서울도매시장의 평균 경락가격은 서울농협 공판장 1개소 단일가격이기 때문에 출하량 등에 따라 일일 경락가격 등락폭이 크게 나타난다.<그림 3>

한 예로 5월 9일(금) 서울 도매시장의 비육 돈 경락가격은 2,742원, 10일(토) 경락가격은 2,451원으로 하루사이 291원이 하락하였으며, 돼지 한 마리당(100kg, 지육율 67% 기준) 19,497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표 2> 주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300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주식 등락선 보다도 심한 기

<그림3> 2003년 6월 돼지 경락가격 동향



복이 나타난 것이다. 일일 가격 등락폭이 크게 되면 출하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구입하는 유통업자도 돼지 거래시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3일간 평균치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포천지역 양돈농가들은 서울 도매시장의 심한 가격 등락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 간의 평균가격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돼지시세 적용 개선안

가.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양돈농가와 유통업자 거래 계약

<표 2> 전국 및 서울 도매시장 일일 가격 등락폭

도매시장	가격		전일대비
	5. 9(금)	5.10(토)	
전국	2,808원	2,690원	-118원(4.2%)
수도권	2,753원	2,549원	-204원(7.4%)
서울	2,742원	2,451원	-291원(10.6%)

위에서 언급한 서울 도매시장 가격의 문제점으로 기준가격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육가공업체들은 서울 도매시장의 가격을 적용하면서 장려금 등 인센티브제도 등을 도입하여 일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현 기준가격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시장별로 기준시세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 지역은 제주 공판장 가격이 기준가격이 되고 있고, 경남지역은 경남지역 공판장 가격과 서울 공판장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고 있다.

시장별 특성도 다양하다. 삼성(인천), 협신(안양), 대양식품(대전) 등은 암퇘지 출하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으므로 전국가격 적용시 출하농가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 시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체별로 다양하게 가격정산 체계를 구축하되, 기준가격은 전국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가격 적용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전국평균과 서울평균 가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기준가격으로서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정부 보상금 산정 등 정책방향 설정 시 전국 13개 도매시장 평균가격 적용

양돈농가와 유통업자의 거래 기준가격을 전국 13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함과 함께 정부의 보상금 산정과 같은 정책방향 설정시에도 전국 13개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으로 기준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먼저 서울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함으로써 양돈농가와 유통업

자의 계도에 앞장서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며, 정부가 양측의 거래에 직접 개입은 아니더라고, 묵시적으로나마 돼지시세 적용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돈산업은 질병발생과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돼지고기의 과잉공급과 국내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내수소비의 저하로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 서울 도매시장의 가격은 양돈농가의 출하를 어렵게 하여 양돈 수급안정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현 기준시세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였다면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3. 앞으로의 방향

양돈산업은 양돈농가 혼자만의 노력으로 발전할 수 없다. 사료산업, 육가공산업, 유통 등 유기적인 협조 속에 발전할 수 있다.

육가공업체들은 돼지 시세 적용 기준에 명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전국 평균가격이 서울 1개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전국 평균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돼지 시세 적용기준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 명분이 명확하면 전국 평균가격이 서울 시세보다 낮더라도 “시세 적용기준을 변경해야 된다”고 안 할 것이다.

양돈농가들이 서울 도매시장에 출하를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해 경락가격이 올라간다면 육가공업체들은 어떻게 하겠는가?**양돈**